

(조례안-참조3)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4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년 4월 6일

발 의 자 : 최병성 의원외 8인

1. 제안이유

- 2001. 11. 10 집행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가 일부 조정되어 성남시행정
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“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,성남시분당문화정보센터”를 성남시중앙문화
정보센터“로 함(안 제3조 제2항 제3호)

3. 관련조례

-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
-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

성남시조례 제 호

성 남 시 의 회 위 원 회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 제3호중 “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,성남시분당문화정보센터”를
“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①(생략) ② (생략) 1. (생략) 2. (생략) 3. 사회복지위원회 문화복지국 직속기관중 성남시 수정구보건소, 성남시중원구보건소, 성남시분당구보건소, 사업소 중 성남시환경녹지사업소, 성남시종합 운동장관리사무소, 성남시영생관리 사업소, <u>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</u> , <u>성남시분당문화정보센터</u> 소관에 속한 사항.	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①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 ----- -----.

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4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년 4월 6일

발 의 자 : 최병성 의원외 8인

1. 제안이유

- 2001. 11. 10 집행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가 일부 조정되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중 “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,성남시분당문화정보센터”를 “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”로 함 (안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)

3. 관련조례

-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
-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

성남시조례 제 호

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“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,성남시분당문화정보센터”를
“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①(생략)	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①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사업소:성남시상하수도사업소, 성남시환경녹지사업소,성남시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,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,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, <u>성남시수정문화</u> <u>정보센터</u> , 성남시분당문화정보센터, 성남시디자인지원사업소	나. 사업소:_____

	_____ 성남시중앙
	문화정보센터-----

다. (생략)	다. (현행과 같음)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